

부산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342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B

변론 종결2021. 3. 16.

판결 선고2021. 4. 27.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12. 14. C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19. 7. 22.,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2. 19.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차전22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4. 24. 'C는 원고에게 9,671,740원 및 그 중 5,013,378원에 대하여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5. 4. C에게 송달되어 2020. 5. 19. 확정되었다.

다. C의 아버지 E가 2018. 2. 19. 사망하여 피고와 C를 포함한 5명의 자녀가 망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8. 4. 1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에게는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아래 표 기재 각 채무(단위: 천원)와 D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무가 있었고, 부 E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등록목 정보	00601 부산지방법원	2016-06-20	2,410
공공 정보	00001 국세청 김포세무서	2016-10-01	5,000
공공 정보	00601 국세청 중부산세무서	2016-10-01	4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망 E의 사망으로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C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녀인 피고가 망 E의 병원비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와 왕래가 거의 없어 C의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5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현경

별지